

미국의 정부관련 사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한 대금지급법안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신속지급법과 제안서 12-16 소개 -

I. 머리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하도급 계약의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는 미국에서도 최근의 경기 침체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예산관리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는 2012년 7월 제안서(Memorandum) 12-16을 통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와 다시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로의 신속한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래 미 연방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신속지급

법(the Prompt Payment Act: PPA)에서는 연방 당국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계약 대금의 즉각적인 지급과 함께 대금지급의 지연이 있을 경우 연방 당국이 연체 이자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연방 당국과 사업자 간에 건설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하도급 계약자에게까지 공사 대금이 신속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이를 연방 계약 일반으로 확대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주계약자가 소규모 하도급 사업자에게 역시 즉각적으로 계약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먼저 예산관리국(OMB)에서 이와 같은 조취를 취하게 된 현재의 미국 상황을 살펴보고, 건설 계약에 관한 특칙을 포함한 신속지급법(PPA)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방 계약과 관련하여 주계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하도급 계약자에게 대금지급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 예산관리국(OMB)의 제안서 12-16의 구체적 입안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II. 미국의 현황¹⁾

현재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이 사업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비축함에 따라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실제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불경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으로부터의 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은 추가적 고용이나 사업 확장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고금리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대기업이 유일하거나 주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대기업으로부터의 대금 지급이 청구서 발송 이후 30일에서 60일, 90일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850개의 소규모 사업자 중 64%가 최소한 60일 이상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20%는 이러한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업자는 연간

총매출액 규모가 5백만 달러 이하였다.

2012년 1/4분기 말 S&P 500 지수의 대상이 된 대기업들의 현금보유고는 1조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1년의 6,090억 달러보다 증가된 수치이다. 그러나 Apple Inc., Wal-Mart Stores Inc., Ford Motor Co.와 같은 대기업들의 대금 지급 시기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Ford Motor Co.의 대변인은 자사의 연간 750억 달러의 구매액 중 45%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따라 40~45일 이내에 대금 지급이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다른 대기업들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의 분기별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Wal-Mart Stores Inc.의 경우는 2009년 1/4분기에 대금 지급까지 최대 27일이 소요되었던 것이 2012년 같은 기간에는 29.5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Apple Inc.의 경우에도 2009년 최대 43일이 소요되었던 것이 2012년에는 52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Experian(global information-services company)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봄 초에 대금 지급 시기는 평균 7.6일 지연되었는데, 이는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1%가 증가된 일수이다. 조사 대상 중 1,000명 이상 고용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연 일수가 거의 28% 증가되는 등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미국의 현황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판 The Wall Street Journal의 2012년 6월 6일자 기사 "Small Firms' Big Customers Are Slow to Pay"(by Angus Loten)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청구서 발송 이후 실제 대금 지급을 받기까지 22.83일이 소요되었던 것이 2012년에는 29.2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nancial-information concern Sage-works에서 50만 개 이상의 사기업 재정정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것으로,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80% 이상이 1,000만 달러 미만의 연간 수입액을 가진 기업이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적시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나 연구, 고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결국 경제 회복의 잠재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대금 지급 시기까지 소요되는 오랜 시간은 연쇄적인 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업이 원자료 구입 등을 위해 지출한 자금을 회수하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결국 기업 성장의 저하로 연결되는 것이다.

Kauffman Foundation에서 실시하고 있는 U.S. starts-ups 연구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0년 5,0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자 중 14%가 대금 지급의 지연을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2008년의 2%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U.S. starts-ups 연구는 2004년 시작된 연구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신생 창설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꾸준히 조사해 오고 있다.

고율 부채의 평균 이자율을 조사해 온 Barclays Investment Grade Index에 의하면 기업 부채의 평균 이자율은 2011년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6월 4일 현재 평균 3.35%의 저리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

자에 대한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여전히 6%에서 20%에 걸침으로써 두 자릿수 이자율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항공사 협력 업체를 예로 들면, 2011년 5만 달러에 이르는 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구조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항공사는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겠지만, 협력 업체는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연체된 대금 지급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꺼려 하고 있으며, 상대가 대기업일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III. 신속지급법(PPA)의 소개

신속지급법(the Prompt Payment Act: PPA)은 the Code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C.)의 Title 31. Money and Finance, Chapter 39. Prompt Payment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연방 계약에 있어 연방 당국으로부터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연체 이자의 지급, 관련 규정의 입안, 건설 계약의 특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연체 이자의 지급

신속지급법(PPA)에서는 연방 당국이 민간 사

업자와 재화의 구입이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었을 경우 요구되는 지급 기일에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연체 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당국과의 계약에 대해서 요구되는 지급 기일은 물품 구매 계약과 같은 경우 별도의 합의 사항이 없을 시 물품 인도 후 30일이며, 건설 계약과 같은 경우 공사 완료 후 30일로 되어 있다. 연체 이자율에 대해서는 재무 장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이 결정하며, 연방 공보(the Federal Register)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²⁾

연체 이자는 요구되는 지급 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대금 지급이 있는 날까지 산정되며, 연방 당국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연체 이자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연체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체 대금액과는 별도로 이자율과 산정 기간, 이자 총액을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체 이자의 지급 자체에 대해서 지급 지연이 있는 경우 별도의 배상이 있어야 한다.³⁾

연방 당국의 일시적인 대금 지급 장애 사유는 사업자에 대한 연체 이자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30일 이후까지 계약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는 채무 원금에 포함되며, 이후의 연체 이자는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산출된다. 연체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연방 당국에

추가적인 자금 전용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연방 당국은 당해 사업의 예산에서 연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⁴⁾

2. 관련 규정의 입안

예산관리국(OMB)의 책임자는 신속지급법(PPA)의 연체 이자와 관련하여 그 집행을 위한 규정을 입안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재화 구입이나 용역 제공 계약에서 합의한 바가 있으면 그 일자, 별도의 특정 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대금에 관한 적정한 청구서의 접수 이후 30일이 요구되는 지급 기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청구서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해서는 청구서의 접수와 함께 검토가 있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유를 특정하여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연방 당국은 요구되는 지급 기일보다 최대 7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개별 사례의 검토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조기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⁵⁾

연방 당국과의 계약자는 대금 지급의 청구를 위해서 청구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청구액이 구체적 계약 내용의 실행에 따른 것임과 하도급 계약 조항 및 신속지급법(PPA)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2) 31 U.S.C. Chapter 39: Sec.3902. Interest penalties (a), (h).

3) 31 U.S.C. Chapter 39: Sec.3902. Interest penalties (b), (c).

4) 31 U.S.C. Chapter 39: Sec.3902. Interest penalties (d), (e), (f).

5) 31 U.S.C. Chapter 39: Sec.3903. Regulations (a).

계약자에게 적시의 대금 지급이 있을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연방 당국으로부터 주계약자에게 대금 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주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자와 개별 계약에 따라 하도급 계약자에게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 금액은 주계약자의 연방 당국에 대한 청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대금 지급 청구는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⁶⁾

3. 건설 계약의 특칙

연방 당국과 건설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자가 신속지급법(PPA)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한 이후에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르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우선 계약자는 연방 당국에 하자에 관한 부분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자가 계약 대금을 기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가 완료되거나 대금 감액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자 부분과 관련하여 기지급 받은 계약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⁷⁾

연방 당국과 건설 계약을 맺은 주계약자가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

에는 하도급 계약 조항에 공사 대금의 지급과 연체 이자에 관한 내용이 편입되어야 한다. 공사 대금에 관해서는 하도급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주계약자는 연방 당국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 대금을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체 이자에 관해서는 주계약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자에게 위의 기간 내에 하도급 공사 대금의 지급이 없을 경우 실제 공사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사 대금의 지급 시기와 연체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역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⁸⁾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교섭의 어느 단계에서도 주계약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에게 연체 이자의 지급 없이 하도급 계약자에 대한 공사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되며,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재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⁹⁾

연방 건설 계약의 주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자에 대한 공사 대금의 지급 유보 사유가 있을 경우

6) 31 U.S.C. Chapter 39: Sec.3903. Regulations (b).

7) 31 U.S.C. Chapter 39: Sec.3905. Payment provisions relating to construction contracts (a).

8) 31 U.S.C. Chapter 39: Sec.3905. Payment provisions relating to construction contracts (b), (c).

9) 31 U.S.C. Chapter 39: Sec.3905. Payment provisions relating to construction contracts (d).

지급 유보된 공사 대금액, 하도급 계약 조항에 따른 구체적 지급 유보 사유, 지급 유보된 공사 대금의 청구를 위해서 하도급 계약자가 취해야 할 하자 보수 조치 등을 특정하여 하도급 계약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 유보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계약자는 연방 당국에도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IV. 제안서 12-16의 소개

2012년 7월 11일 미 예산관리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는 “소규모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대금의 신속한 지급 (Providing Prompt Payment to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이라는 제안서(Memorandum) 12-16을 공표한 바가 있다. 이는 신속지급법(the Prompt Payment Act: PPA)의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안서의 개요¹⁰⁾

미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성장과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미 전지역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 정부 당국에서는 소규모 사

업자가 연방 정부와 재화 및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관련한 대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소규모 사업자에게 연방 정부와의 계약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2011년 9월 14일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재화와 용역 대금의 조기 지급”이라는 제안서 11-32를 공표한 바가 있다. 제안서 11-32에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관련 서류의 접수 이후 15일 이내의 지급을 목표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계약 대금의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행정부의 정책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대금 지급은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 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 쪽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연방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제안서 11-32에서 제시된 정책에서 더 나아가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 상황 개선으로 연방 정부 발주 계약의 각 단계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2년 7월 11일 “소규모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대금의 신속한 지급”이라는 제안서 12-16을 입안하였다. 제안서 12-16에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범위에서 연방 계약의 주계약자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게 대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10) Memorandum 12-16, “Providing Prompt Payment to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p. 1.

를 개요함과 동시에 연방 당국이 그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행정부의 정책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최근의 불경기와 관련하여 주 계약자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범위에서 대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방 당국으로부터 주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제안서 12-16의 내용은 연방 정부의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체 이자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신속지급법(PPA)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배경¹¹⁾

신속지급법(PPA) 및 예산관리국(OMB)의 시행규정, 제안서 11-32 등에 의하면 연방 당국은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연방 당국으로부터 신속지급법(PPA)에 규정된 지급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 당국은 그에 따른 연체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속지급법(PPA)의 취지에 따라 연방 당국은 일반적으로 앞의 30일 지급 기한보다 7일 정도 앞서 주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지급법(PPA)과 예산관리국(OMB)의

시행규정에서는 연방 당국이 '필요하다(necessary)'고 판단할 경우 연방 당국에게 대금 지급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예산관리국(OMB) 시행규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일 경우, 승낙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지급기일 이전에도 소규모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대금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제안서 11-32에 규정된 정책에 따라 연방 당국은 이미 소규모 주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예산관리국(OMB)과 재무부(the Treasury)의 협의에 따라 신속지급법(PPA)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효율적 자금 관리에 따른 운영을 충실히 하면서 연방 당국으로부터 소규모 주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방 정부의 자금 관리 비용이 낮은 기간 동안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의 위험을 초래함 없이 신속한 대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3. 제안서의 내용¹²⁾

제안서 12-16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서 더 나아가 하도급 계약자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연방 정부로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받은 주계약

11) Memorandum 12-16, "Providing Prompt Payment to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p. 2.

12) Memorandum 12-16 "Providing Prompt Payment to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pp. 2~4.

자가 신속한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안서 12-16에서는 연방 당국이 아래에 개요된 바와 같은 조치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범위에서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게 주계약자로부터 대금 지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연방 당국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모든 주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조기 처리를 위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안서 11-32의 정책에 따라 연방 당국은 관련 서류의 접수 이후 15일 이내의 지급을 목표로 모든 주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 권고되며, 주계약자에 대한 조기 대금 지급이 실제 가능한 최단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한시적 정책이 유효한 동안 연방 당국은 주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 a. 소규모 하도급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 b. 주계약자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사업자에게 추가적 비용이나 수수료 없이 대금 지급이 가능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현재의 계약 내용을 수정할 것을 고려할 것
- c.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와의 향후 계약 내용에 삽입할 것

이와 같은 내용을 보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연방구매규제위원회(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ory Council: FAR Council)에 주계약자와 연방 당국의 계약서에 주계약자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로의 대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는 계약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 유형을 고려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연방구매규제위원회(FAR Council)가 연방 건설 계약의 경우 건설 결과에 따라 주계약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속지급법(PPA)의 규정을 한 예시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연방구매규제위원회(FAR Council)에서 소기업청(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과의 협의하에 향후 건설 계약 이외의 경우에도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게 대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는 하도급 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모든 주계약자에 대한 조기 대금 지급 정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1년 동안의 한시적인 것이다. 그 기간은 주계약자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로의 신속한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 조항의 추가를 위해서 연방 당국이나 주계약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배려한 것이다.

제안서 12-16의 발효 1년 이후 연방 계약 대금의 조기 지급 정책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또한 연방 당국 역시 한시적·경과적 조치에 따라 이루어졌던 주계약자에 대한 조기 대금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주계약자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게 신속한 대금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방 당국에서 고려해야 할 적절한 조치들에 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예산관리국(OMB)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인데,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주계약자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로의 신속한 대금 지급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계약자에게 연방 당국으로부터 조기 대금 지급 처리가 계속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주계약자가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게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연방 당국이 그를 계약 체결의 참작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일자리법안(the Small Business Jobs Act) 규정의 적용과 같은 재량적 결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이 추가적 가이드라인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현재의 분석뿐만 아니라,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 대한 신속한 대금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방 평가 당국의 자료가 보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안서 12-16의 발효 이후 각각 6개월과 1년 이내에 각 연방 당국은 예산관리국(OMB)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a. 연방 당국이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안서 12-16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적·경과적 정책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범위에서 주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조기에 처리하고 있는가와 관련한 경과 보고서
- b. 소규모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대금 지급을 명시한 계약 조항의 추가에 관한 연방 계약 상위 25개 주계약자와 관련한 경과 보고서
- c. 소규모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해 연방 당국이 취하고 있는 다른 조치와 관련한 경과 보고서

연방 당국은 소규모 주계약자로부터 소규모 하도급 계약자에게 대금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을 즉각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제안서 12-16의 공표와 집행은 제안서 11-32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안서 11-32는 예산관리국(OMB)에서 대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안서 12-16은 신속지급법(PPA)의 연체 이자 지급 관련 조항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속지급법(PPA)과 예산관리국(OMB)의 시행규정에 따라 연방 당국으로부터 요구되는 지급 기일 내에 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 당국은 연체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안서 12-16과 그 집행은 요구되는 지급 기일에 변경을 가하지 않으며, 연체 이자의 산정에도 변경을 가하지 않는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미국에서 연방 정부와 사업자 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 있을 경우 신속한 대금 지급의 처리를 규정한 신속 지급법(P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확대하여 연방 계약과 관련한 소규모 하도급 사업자에게도 대금 지급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 예산관리국(OMB)의 제안서 12-16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예산관리국(OMB)에서 제안서 12-16을 입안하게 된 배경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에서도 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이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경제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속지급법(PPA)이나 제안서 12-16은 연방 정부와 사업자 간의 계약, 그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에 제한되어 있으며, 제안서 12-16은 그 시행이 한시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체 이자의 지급이나 대금의 신속한 지급에 관한 계약 조항의 삽입과 같은 간접적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앞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다른 여러 보호 육성 조치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 대 홍

(서울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문헌

William G. Arnold, *The Prompt Payment Act Answer Book*, Management Concepts, 2009.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 *FINANCIAL MANAGEMENT: TIME TO REFORM THE PROMPT PAYMENT ACT?*, BiblioGov, 2010.

"Small Firms' Big Customers Are Slow to Pay" by ANGUS LOTEN, *The Wall Street Journal*, 2012. 6. 6.

"Providing Prompt Payment to Small Business Subcontractor", Memorandum 12-16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2. 7. 11.

"Accelerating Payments to Small Business for Goods and Services", Memorandum 11-32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1. 9. 14.

The Code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C.), 2006 Edition.

웹사이트

<http://www.fms.treas.gov/> (최종접속 2012.09.10).

<http://www.gpo.gov/> (최종접속 2012.09.10).

<http://www.treasurydirect.gov/> (최종접속 2012.09.10).

<http://online.wsj.com/> (최종접속 2012.09.10).

<http://uscode.house.gov/> (최종접속 2012.09.10).